

〈별표70〉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

약관에 규정하는 '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'은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, 2023.1.1. 시행)' 제4조 별표3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)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분류항목	특정기호
〈별표70-1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'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〈별표70-2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'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	V191
〈별표70-1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'에서 I60~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. 단, 〈별표70-2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'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	V268
〈별표70-1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'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중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. 단, 〈별표70-2〉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'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	V275

- 주) 1. NIHSS란,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의 약자로 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.
 2.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.